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588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노종면 · 김주영 · 이주희  
문금주 · 채현일 · 서영석  
이정문 · 조계원 · 최민희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2. 3년을 초과하여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50
3. 7년을 초과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30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2. 3년을 초과하여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50
3. 7년을 초과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30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연구인력의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연구인력을 채용하면서 해당 인력의 국내 이주 및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수당, 주거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의 구체적인 범위,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5년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신성장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신성장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 연구인력의 정착지원금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인력개발비 미공제 세액의 이월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 제3항 및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u>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u> 다만, <u>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u> |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br>-----<br>-----<br>-----<br>-----<br>-----<br>-----<br>-----<br>-----<br>-----<br><u>소득세에</u><br><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u> -----<br>----- . <단서 삭제> |

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  
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70

2. 3년을 초과하여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50

3. 7년을 초과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분의  
3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  
-----  
-----  
-----  
-----





하는 중소기업이 신성장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  
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